

=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=  
**심 사 보 고 서**

**1. 심사경과**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11. 16 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7. 11. 20

다. 상 정 일 자 : 제153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('07.12.21) 상정 의결

**2. 제안설명의 요지(조동규 재무과장)**

**가. 제안이유**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임.

**나. 주요골자**

○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사업은 총2건으로 주차여건이 열악한 감천2동과 당리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임.

**○ 취득대상재산 현황**

위 치	면적(m <sup>2</sup> )		소요예산 (천 원)	비 고
	토 지	건 물		
계	1,170	800.77	1,730,000	공사비541,000천원 포함
감천2동12번지외1필지	918	591.16	1,141,000	공사비350,000천원 포함
당리동78-1번지외1필지	252	209.61	589,000	공사비191,000천원 포함

**3. 관계법령**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(제10조)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(제7조)
-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(제11조)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##### 가. 200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

그 주요내용이 주차여건이 열악한 감천2동과 당리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예정부지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재산취득의 필요성, 관계법령과의 적법성,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음.

##### 나. 먼저, 재산취득의 필요성 측면은

2007년도 우리구 전역에 대한 주차장 실태조사 결과 공영주차장 건설예정 지역인 감천2동 12번지 일원은 구획정리가 되지 않아 도로망이 취약하고, 주차시설이 절대부족한 지역이며, 당리동 78-1번지 일원도 주변도로가 협소하고,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도로변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임.

##### 다. 관계법령 부문은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우리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본 계획안은 제출시기가 예산안 제출과 동시에 이루어져 법령이 정한 시기와 맞지 않음.

##### 라. 재원조달 가능성은

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재산취득비와 공사비 등은 총1,730백만원입니다만, 이중 975백만원은 구비로, 755백만원은 시비보조를 받아 확보하였음.

**마. 이상과 같이 본 안건은**

사업의 필요성,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 
안건 제출시기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지키기 못하고 있음.

그러나,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시급한 현안사항임을  
감안하여 금후부터는 관계법령이 정한 제출시기를 준수하여 줄 것을  
촉구하면서 가결처리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.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6. 토 론 요 지 : 없음**

**7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**